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 안 번 호	2316

제안년월일: 2024년 12월 18일
제 안 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○ 박승진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1997호)과 김경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2158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

○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내용을 수정·통합하여 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」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사유

○ 기존의 공동주택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를 신규 주택에만 규정하고 기축 주택에는 면제하는 대신 공중이용시설, 공공건물 및 주차장의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을 세분화하며,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·인증에 관한 업무와 홍보·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골자

가.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세분화(안 제7조의4).

나.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·인증, 홍보·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안 제11조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제6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.

제7조의4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영 제18조의5제2호에 따른 기축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7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2항과 제3항”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1.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: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
2.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과 주차장: 전체 충전시설의

100분의 10 이상

제11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및 인증에 관한 업무

4. 제10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업무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·2. (생 략) 3. (생 략) 4.·5. (생 략) 7. (생 략) 8. ~ 10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6. (현행 제3호와 같음) 4.·5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 제7호와 같음) 7. ~ 9. (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
제7조의4(충전시설 설치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(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) 이상으로 하되,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. **<단서 신설>**	제7조의4(충전시설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. 다만, 영 제18조의5제2호에 따른 기축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<신 설>	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 1.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: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 2.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과 주차장: 전체 충전시설의

현 행	개 정 안
	100분의 10 이상
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	④ 제2항과 제3항----------.
④·⑤ (생 략)	⑤·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제11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서울에너지공사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	제11조(업무의 위탁)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.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및 인증에 관한 업무
2. (생 략)	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<신 설>	4. 제10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업무
3. (생 략)	5. (현행 제3호와 같음)